

# 김정일 행정법 강의계획서

“행정법 각 기본서의 수험적합적인 이론과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중요사례 및 기출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수록한  
트리니티 행정법의 집중학습과 주요사례에 대한 정확한 풀이를 통해  
고득점 답안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완성할 수 있는 강의!”

## ■ ■ 담 당 김 정 일 변호사

- 사법시험 제40회 최종합격
- 법무법인 백범 변호사
- 現)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

## ■ ■ 강의일정 2019년 8/9(금) ~ 9/2(월), 총 21회

※ 1순환 수강 전, 기출분석과 답안작성방법 특강(7/28) 및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개관 & 주요 법조문 활용 특강(8/4)을 실강 또는 동영상으로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 ■ 시 간 [오후 실강반]

- 1) 1시간 복습시험: 1시 ~ 2시 ※ 주 2회(1시간, 50점) 복습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 2) 강의시간: (시험 있는 날) 2시 10분 ~ 5시 50분 / (시험 없는 날) 1시 40분 ~ 5시 50분
- ※ 1:1 Q&A 및 답안첨삭은 매일 저녁 6시 ~ 7시까지 2층 심층상담실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kji7304@daum.net](mailto:kji7304@daum.net)로도 질문 가능합니다.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저녁영상반]

- 1) 1시간 복습시험: 6시 ~ 7시 ※ 주 2회(1시간, 50점) 복습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 2) 강의시간: (시험 있는 날) 7시 10분 ~ 10시 50분 / (시험 없는 날) 6시 40분 ~ 10시 50분

## [익일 오전영상반]

- 1) 1시간 복습시험: 8시 ~ 9시 ※ 주 2회(1시간, 50점) 복습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 2) 강의시간: (시험 있는 날) 9시 10분 ~ 12시 50분 / (시험 없는 날) 8시 40분 ~ 12시 50분

- ## ■ ■ 강의교재
- 트리니티 행정법(김정일, 2019 총론 + 각론 통합 전면개정판, 8월초 출간, 서점구매) + 1순환용 행정법연습사례집(제본집, 무료제공) + 최근 7년간 기출문제 분석자료(무료제공) + 행정법사례풀이방법(무료제공)
- ※ 실강반에도 필기자료가 제공되며, 수업 참여 시 반드시 법전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 교재특징

### 1. 트리니티 행정법

첫째, 이 교재는 우선 각 쟁점별로 암기사항을 따로 정리하여 답안작성시 써야 할 내용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사례풀이방법에 대한 팁 등을 낱개 형식으로 편집하여 본문내용과 보충설명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어 전체내용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셋째, 각 쟁점별 중요도와 기출문제의 출제빈도 등을 별표로 표시하여 중요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최신 판례와 개정된 각 교수님의 기본서 중 변경된 내용 및 개정된 법령(행정심판법 등)이나 추가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트리니티 행정법은 다양한 출제패턴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행정법의 모든 중요 학설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한 수험서입니다.

따라서 실제 2019년 5급 공채 행정법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2020년에도 행정법 시험문제가 트리니티 행정법에서 벗어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감히 자부합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복하여 회독수를 늘리신다면 행정법 고득점도 충분할 것입니다.

### 2. 1순환용 행정법사례자료 및 기출문제

정식출간된 행정법 연습사례집 중 1순환에서 확인해야 할 사례들을 선별하여 자료로 제공합니다.

2, 3순환에서도 각 순환에 맞는 사례를 풀이하므로 3순환이 종강할 때면 중요한 사례를 모두 풀어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3. 행정법사례풀이방법

수년간 5급공채 기출문제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모든 사례문제는 이 자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열심히 학습하고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누구보다 행정법이 자신 있는 고득점 과목이 될 것입니다.

### 4. 답안지 형식 핵심암기쟁점

효과적인 주요내용 학습과 답안지 적용을 위해 행정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하고 암기해야 할 내용을 요약하여 답안지 형식으로 편집한 자료입니다. 트리니티 행정법으로 1순환 강의를 수강한 후 핵심암기 쟁점자료를 복습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강의특징

1. 트리니티 행정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각론까지 포함하였으며 시험에 출제가능한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암기할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고 2019년 7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각 교수님들의 기본서 내용을 모두 반영 하였습니다.

2. 모의고사와 답안작성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을 고려하여, 1~2회차에는 행정법 전체 개관을 강의 합니다. 법전 활용법과 소송구조 개관에 대한 특강은 무료 동영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3. 효과적인 주요내용 학습과 답안지 적용연습을 위해 행정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하고 암기해야 할 내용을 요약하여 답안지 형식으로 편집한 '핵심암기 쟁점자료'를 제공합니다. 트리니티 행정법으로 1순환 강의를 수강한 후 핵심암기 쟁점자료를 복습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강사가 직접 수강생들의 답안을 참고하여 수강생의 입장에서 답안작성 시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답안작성 관련 중요한 사항은 수업시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론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답안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5. 매 강의시간 끝나기 직전 쪽지 시험을 보아 그 날 배운 내용에 대하여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매일 강의 끝난 후 1시간동안 1:1 Q&A 및 답안작성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6:00~7:00, 2층 심층상담실에서 진행)

■ 강의목표

※ 1순환 강의의 목표는 원론강의나 예비순환을 통해 학습한 기본서의 중요내용을 복습하면서 사례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평면적으로 공부해왔던 기본서의 내용들이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판례의 논리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습한 이론을 구체화하여 사례에 적용하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첫째, 기본서의 중요내용과 기본서에 기재된 주요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여 강의합니다.

둘째, 5급공채 기출문제와 중요사례문제를 자세하게 풀이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강의는 행정법 이론 설명(60%), 사례문제풀이 및 판례해설(40%)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1순환 강의일정 동안 강의내용의 복습용으로 제공해드리는 행정법 사례풀이의 방법자료와 핵심암기 쟁점자료를 반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의 중 알려드리는 교수님 교과서 속지 부분은 예습, 복습 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년간 5급공채 시험에서 입증된 것처럼 1, 2, 3 순환 모의고사 및 사례풀이에서 푼 문제들이 그대로 시험장에서 출제되었던바 이번 모의고사문제(주, 2회 시행)는 최근 기출경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아래, 최신판례를 사례화한 문제와 최신 대학 모의고사 등을 검토한 문제를 출제하여 내년에도 꼭 모의고사가 적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9년

2019년 5급공채 행정법

5급공채  
행정법  
적중사례

1. 총평

이번 2019년 5급공채 행정법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문제 중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설형 문제의 특징은 논점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인데 이번 문제는 분설형임에도 논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였더라도 사안 포섭을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출제경향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될 확률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학설과 판례의 단순암기로는 행정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그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제1문에 대하여

(1) 제1문의 1)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용행위라는 적극적 처분을 막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수단은 첫째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둘째 민사집행법상 예방적 금지가처분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학설과 판례를 간략히 서술한 후 검토에서 설득력 있게 쓰신 분들이 고득점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에 대해선 저의 3순환 정선사례집에 동일한 논점이 있습니다).

(2) 제1문의 2)에 대하여

이 문제가 논점을 파악하기 힘든 문제라고 보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절차상 하자는 제외라고 하였던 바 주체, 형식, 내용상 하자인데 사안에서 주체, 형식상 하자는 없다고 보입니다. 내용상 하자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용행위시 갖추어야 할 요건(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으로 학식, 덕망 등은 불확정개념이고 고도의 가치평가영역입니다. 따라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결국 판단여지에 대한 일반론을 답안지에서 서술하신 후 사안에서 2순위자를

임용한 행위가 특별히 판단여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행위가 아니라고 서술하시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선 저의 2순환, 3순환 최신판례 13.에 출제될 수 있는 논점으로 판단여지라고 정확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3) 제1문의 3)에 대하여

이 문제는 원고적격이라는 논점은 이미 주어져 있는 바 사안포섭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하는가에 따라 고득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선 저의 3순환 핵심암기장 원고적격 부분 판례에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시이사 제도의 취지,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사립학교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1.6.9. 대통령령 제22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을 법인 정관 규정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 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룰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대판 2015.7.23. 2012두19496)”라고 판시하여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 3. 제2문에 대하여

(1) 제2문의 1)에 대하여

이 문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수험생분들이 서술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지는 당해 사무가 기관 위임사무인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 양자 모두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에서 이러한 점을 적시한 후 당해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간략히 검토한 후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신 후 사안포섭에서 설치관리자인 A광역시와 비용부담자인 B구가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서술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이에 대해선 저의 3순환 정선사례집 및 3순환 모의고사 제12회에서 동일한 논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제2문의 2)에 대하여

이 문제는 교수님 기본서에도 잘 나와 있지 아니하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수험생분들이 답안지 작성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판례는 “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따라서 우선 피고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첫째 설치관리의 하자에서 기능상 하자에 대한 일반론(저의 3순환 핵심암기장과 정선사례집에 있습니다)을 검토한 후 만약 사안에서 피해자가 위 도로에 환경법령상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주하였다면 그 자의 수인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설치관리의 하자가 없어 피고의 주장이 타

당, 둘째 위와 같은 소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하였다면 설치관리의 하자는 인정되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이주가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설치관리의 하자과 피해자의 이주가 손해발생에 공동의 원인인 바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주한 과실이 있는 바 과실상계에서 의해서 손해액은 감액될 것이다 라고 서술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 4. 제3문에 대하여

이 문제는 구청장의 등재보류 지연이라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청인 광역시장의 행정적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법 제170조의2 직무이행명령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선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일반론을 서술한 후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으로 당해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직무이행명령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서술하셨으면 고득점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저의 3순환 정선사례집 쟁점 45. 유제1에 동일한 논점이 있습니다).

#### 판례 12 - 출제가능성 : 보통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는 대통령이 자신에 대하여 총장 임용 제외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다투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제외행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는 판례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의 최종적인 임용권 행사에 앞서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일차적으로 심사하여 대통령의 임용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만일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으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는 대통령이 자신에 대하여 총장 임용 제외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다투어야 한다(대통령의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처분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2] 교육공무원법령은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대학이 정한 순위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학이 복수의 후보자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후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더라도 단순히 그것만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학 총장 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비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총장 임용제청이나 총장 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대학의 장에 관한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교육부장관이 어떤 후보자를 총장 임용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배제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정하는 경우라면 배제한 후보자에게 연구윤리 위반, 선거부정, 그 밖의 비위행위 등과 같은 부적격사유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제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후보자의 경력, 인격, 능력, 대학운영계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장 임용의 적격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판단 결과를 수치화하거나 이유제시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어떤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제정하는 행위 자체에 그가 총장으로 더욱 적합하다는 정성적 평가 결과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로써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교육부장관에게 개별 심사항목이나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더 자세히 밝힐 의무까지는 없다.

[4]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용제정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정 제외처분 또는 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장관이 총장 후보자에게 총장 임용 부적격사유가 있다고 밝혔다면, 그 후보자는 그러한 판단에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음을 주장·증명함과 아울러, 임용제정되었거나 임용된 다른 후보자에게 총장 임용 부적격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증명이 있을 때 비로소 그에 대한 임용제정 제외처분 또는 임용 제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두 후보자의 총장 임용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여 임용제정 또는 임용을 할 의무가 발생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 판례 12에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

법률상 국립대학교 총장은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정한 후보자들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안에서 국립대학교수 갑이 교육부장관에게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임용제정을 해달라고 신청하였는데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정신청을 거부하고 을교수를 임용제정한 후 대통령이 을을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갑이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정신청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 ① 소송요건 - 특별권력관계이론 인정여부
- ② 소송요건 - 대상적격 :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정신청 거부가 행정부 내부간의 행위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 ③ 소송요건 - 이미 대통령이 을을 총장으로 임명한 경우 이를 갑에 대한 총장임용제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러한 경우 위 임용제정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보다 총장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협의의 소익이 없는지
- ④ 본안판단 - 총장임용적격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지

##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내용	출제가능논점
■ 제 1 회	8/9(금)	행정법 전체체계, 행정소송 전체개관 I	
■ 제 2 회	8/10(토)	행정소송 전체개관 II	
■ 제 3 회	8/12(월)	실질적 의미의 행정 ~ 자기구속원칙까지	법률유보원칙(B), 자기구속원칙(A)
■ 제 4 회	8/13(화)	비례원칙 ~ 공무수탁사인까지	비례원칙(B), 신뢰보호원칙(A), 소급입법(A), 공무수탁사인과 국가배상(B)
■ 제 5 회	8/14(수)	공권 전체	공권의 확대화 경향(B),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B)
■ 제 6 회	8/15(목)	특별행정법관계 ~ 공법상 부당이득까지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B),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리(B),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B), 신고(A)
■ 제 7 회	8/16(금)	행정입법 I	법규명령의 한계(A),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A)
■ 제 8 회	8/17(토)	행정입법 II	행정규칙의 법적성질(C),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A), 법령보충규칙(A)
■ 제 9 회	8/19(월)	행정행위의 의의 ~ 강학상 하명까지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A),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A), 판단여지(B), 가행정행위(B), 사전결정(A)
■ 제 10 회	8/20(화)	강학상 허가 ~ 강학상 부관까지	제재처분의 승계(A), 재건축(A), 기본행위와 인가 상호관계(B), 부관의 종류(B), 부관의 가능성과 일반적 한계(A),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A)
■ 제 11 회	8/21(수)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까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A),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B)
■ 제 12 회	8/22(목)	행정행위의 하자의 예 ~ 행정행위의 실효까지	하자의 승계(A), 하자의 치유(B),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A), 직권취소의 제한 및 취소의 취소가능성(A), 철회의 가능성 및 철회의 제한(A)
■ 제 13 회	8/23(금)	확약 ~ 행정계획까지	확약의 구속력(B), 행정계획의 법적성질(B),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원칙(A), 집중효와 인허가의제제도(A), 계획보장청구권(B)

■ ■ 제 14 회	8/24(토)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까지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A), 이유부기의 하자(A), 불이익처분절차(A),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인지(A), 비공개사유(B), 정보공개와 권리구제(A)
■ ■ 제 15 회	8/26(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국가배상 I	대집행(A), 과징금(A), 위반사실 공표(B), 관허사업제한(C), 즉시강제(B), 행정조사(A)
■ ■ 제 16 회	8/27(화)	국가배상 II	법령위반의 의미(A),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A), 선결관계(B), 공무원개인의 민사책임(A), 이중배상금지(A), 국가배상책임자(A), 자동차운행책임(B), 영조물책임(A)
■ ■ 제 17 회	8/28(수)	손실보상, 행정심판	보상규정없는 경우 구제방법(A), 희생보상(C),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A), 의무이행심판(A), 임시처분제도(A), 행정심판의 재결(A)
■ ■ 제 18 회	8/29(목)	행정소송 I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A), 변경처분시 소의 대상(A), 제3자 원고적격(A), 협의의 소익(A)
■ ■ 제 19 회	8/30(금)	행정소송 II	제소기간(B), 집행정지(A), 처분사유추가변경(A), 위법판단기준시(A)
■ ■ 제 20 회	8/31(토)	행정소송 III	취소확정판결의 제3자효(B), 기속력과 간접강제(A),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A), 부작위위법확인소송(A)
■ ■ 제 21 회	9/2(월)	행정법각론 전반	행정조직법(C), 공무원법(A), 지방자치법(A), 경찰행정법(A), 공물법(A), 공용수용 및 공용환권(A), 공시지가제도(B)